

“원전관련 지방세 독점 개선하라”

장명식 도의원 문제제기

영광군 605억원 반면 고창군은 한푼도 못받아 불합리한 지방세법 지적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지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반경이 넓고, 고창과 부안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북도에서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도 연간 600억원의 지방세는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지적했다.

그는 “운배수 피해보상금은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많게 받았지만,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 즉, 지방세는 모두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난 80년대 고창 주민들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에 필요하다는 말에 관내 토지 50만평을 내줬지만, 지방세 등 보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또한, 지방세가 전혀 없어 비상계획구역 지정은 허울일 뿐”이라며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정책협의를 가졌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없어 참으로 서운하고,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도가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고창군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2·사진) 의원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올 한해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승하진 도지사는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참석해 2018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 주민투표 청구권자 152만여명 확정

도민 도정 참여 활성화·행정 민주 투명성 증대 기대

전북도는 2018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발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58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282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

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구권자 총수 152만 8,587명의 20분의 1인 7만 6,430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8,282명의

100분의 1인 1만 5,283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2만 8,282명의 100분의 10인 15만 2,829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도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초등돌봄전담사 정규직전환 촉구

김대중 도의원 주장



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원칙에 맞게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돌봄전담사들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생활 및 안전을 지도하고 귀가할 때까지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는 최종적으로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사진)은 10일 열린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의 원칙대로 초등돌봄전담사(이하 돌봄전담사)를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차례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방침을 미리 세워 놓고 정규직전환심의회에 책임을 돌리려 하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해왔고 돌봄전담사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지적하고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평균 3~4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출근하

동계 승어잡이 제한 ‘어민 울상’… 허가 촉구

조병서 도의원 5분발언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조병서 의원은 문제제기에서 새만금 방조제 완공된 2006년 이후 새만금 내측 어획이 불가능해 어획

전북도의회 조병서(부안2·사진) 의원이 겨울철 승어잡이 한시어업허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8년 전라북도의회 첫 회기인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시어업허가를 요구했다.

부안과 군산 등 도내 어민들은 최근 수년 동안 겨울철 승어잡이가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의 한시어업허가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 어민들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승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중이상 자망으로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북도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이중이상 자망’의 허가권이 도지사에 있고, 강원과 경북 등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도 전북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계에

량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폐선한 도내 어선이 780척에 이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협의 결과임을 비판하며 추가역량을 통한 승어잡이 허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금이라도 용역을 재추진해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복합적인 점을 고려하고, 겨울철 한시어업 허가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명절전 차액 지원

2017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차액 지원이 결정된 ‘가을무’의 농가별 출하이행을 조사가 완료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을무’를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 품목으로 즉시 결정하고, 농가별 출하이행을 조사를 진행, 그 결과 약정출하이행율이 92%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출하기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

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지원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며 “이번 지원이 도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 원예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